

영등포구의회
제 1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화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0.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89호로 2015년 10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제기
기한 변경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처분 통지 등 근거조항 변경
(안 제3조, 제4조제1항)

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기한 변경
(안 제5조제1항)

다. 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 근거조항 변경(안 제9조제1호)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변경(안 제15조제3호)

- 신고자 포상금 합계 전국 기준 월 평균 50만원 → 30만원

마.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으로 준용(안 제18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바.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 개정

(별지 제2호, 4호, 5호, 7호, 11호, 12호)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1조제3항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제2조제12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9. 3 ~ 9. 2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의견진술·처분통지 및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등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현재 30일 이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 2)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대상에서 포상금 합계가 전국을 기준으로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서 월 평균 3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조정하였음.
 - 이는 자체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권고사항과 전문 신고자들로 인해 주민들 간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 등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함.

3)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운용 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한 것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 규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4)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서식 6종(제2호, 4호, 5호, 7호, 11호, 12호) 중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정보를 생년월일로 개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8.3.21.]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
4.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반환보증금을 사용한 자
- 7의2. [제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를 한 자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한 자
10. [제25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25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4. [제25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25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3.8.13.>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1.21.> [전문개정 2008.3.2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업종을 말한다.

1.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2.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다른 장소와 구분된 공간을 말하며,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은 같은 공간으로 본다)에 고정된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21.>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서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매장 면적 기준을 33제곱

미터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로 정한 면적 이하인 경우로 한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1회용품의 사용량, 1회용품 사용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2.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4.2.1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